

# 경북테크노파크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운영협약서

[경북테크노파크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운영사업]

○ 총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5 월 31 일까지

○ 사업비

법인명	학교명	구분	사업비(천원)			비고
			테크노파크	대학	계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현금	700,000	200,000	900,000	
		현물	-	-	-	
		계	700,000	200,000	900,000	

○ 총괄책임자

소속 : 대구대학교 특성화개발촉진센터      직위 : 센터장      성명 : 박철재

○ 협약당사자

“갑” :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이 재 훈

“을” : 대 구 대 학 교      총장 직무대행      조 희 금

2018년 6 월 1 일

## 목차

제1조(협약당사자) .....	1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제3조(협약의 목적) .....	2
제4조(인프라 확충 사업의 범위) .....	2
제5조(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실무단 구성 등) .....	3
제6조(인프라 확충 사업의 시행 및 세부계획서) .....	3
제7조(사업비의 조달 및 운용) .....	3
제8조(R&DB센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및 부지 사용권) .....	4
제9조(준공 후의 운영 및 관리) .....	5
제10조(상호협력책임) .....	5
제11조(불가항력) .....	6
제12조(발효일 및 협약기간) .....	6
제13조(협약의 종료) .....	6
제14조(비밀유지의무) .....	7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	7
제16조(신의성실원칙) .....	7
제17조(분쟁의 해결) .....	8
제18조(협약의 해석) .....	8
제19조(완전협약) .....	8

# 경북테크노파크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운영협약서

본 경북테크노파크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운영협약서(이하 “협약” 또는 “협약서”라고 칭함)는 협약당사자 “갑”과 “을” 간에 2018년 월 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 제1조(협약당사자)

본 협약에서 기술하는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갑”과 “을”을 말한다.

“갑” :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삼풍동 300)

전화 : 053-819-3000

“을” : 대구대학교(학교법인 영광학원)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화 : 053-850-5000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 사용된 다음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달리 해석하고자 하는 협약당사자의 의사가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정의에 따라서 해석 한다.

“사업계획서”라 함은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계획안에 첨부된 본 협약상의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을”의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말한다.

“세부계획서”라 함은 본 협약서 제6조 제2항에 기술된 인프라 확충 사업의 세부 계획을 말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본 협약서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갑”과 “을”이 출연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사업기간”이라 함은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 까지로 한다.

“R&DB”라 함은 Research & Development, Business를 의미한다.

“R&DB센터”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부지 내에 건립되는 기술창업HUB센터를 의미한다.

“R&DB부지”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 “을”에서 제공하는 대학 부지를 의미한다.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서 제4조에서 기술하는 경북테크노파크 인프라 확충 사업 시 건립되는 기술창업HUB센터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대학의 산학협력 유관기관을 경북테크노파크 R&DB 내 집중 배치(One-Roof 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연계강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 지원창구 일원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동 및 창업보육 센터 공간 확충을 통한 기업유치와 지역혁신의 강화 등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갑”이 추진하는 R&DB 기술창업HUB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함에 있다.

### 제4조(인프라 확충 사업의 범위)

본 협약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계획안의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서에 따라 “을”이 제공하는 R&DB부지 내에 R&DB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실무단 구성 등)

1. 본 협약서 제3조에 명시된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갑”과 “을” 상호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교류를 위하여 “갑”과 “을”의 실무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상기 1항의 실무단은 “갑”과 “을”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본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갑”과 “을” 간의 연락업무와 관련 실무를 추진한다.
3. 실무단 위원은 자신을 추천한 협약당사자의 일방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의사를 대변하며, 소속기관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실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갑”과 “을”은 자체 심의기구를 두어 사안발생 시 본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을”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갑”의 특화센터 의견을 자체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하여 상호협의를 원활을 기해야 한다.

### 제6조(인프라 확충 사업의 시행 및 세부계획서)

1. 본 협약상의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은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을”이 주체로서 시행한다.
2.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을”은 본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협약서 제7조 1항 및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총사업비와 사업 일정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조달 및 운용)

1. 본 협약상의 인프라 확충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갑”의 출연금 7억원(₩700,000,000-) 및 “을”의 출연금 2억원(₩200,000,000-)을 합한 총액 9억원(₩900,000,000-)으로 하고, “갑”과 “을”은 본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 향후 R&DB 센터에 대한 권리를 본 협약서 제7조 제6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한다.

2. 위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R&DB센터의 준공 및 인허가, 등기 등 R&DB센터의 준공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일체의 비용(“갑”과 “을”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종 세금 포함)을 지불하는데 사용되며, 준공이후 각종 세금을 포함한 R&DB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3. “을”은 세부계획서 및 시공사와 체결된 계약서에서 명기된 R&DB센터 건설 공정에 따른 대금지급 일정에 따라 “을”의 회계규정에 의해 처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소요사업비를 청구한다. 이 경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최종정산 결과에 관련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정산이 곤란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총사업비의 지출은 “갑”의 출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한다.

5. “을”은 세부계획서에 승인된 총사업비 및 협약일정 내에 모든 인프라 확충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사의 모든 공정을 감독할 책임을 지며, 제11조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협약 체결 시에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를 증액 또는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6. 위 제7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당사자는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감액, 기간연장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단, 총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가된 액수를 “을”이 출연하고 이에 따라 제7조 제1항에 명기된 “갑”과 “을” 간의 출연금의 비율을 조정하며, 그 비율에 따라 향후 R&DB센터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도 상호 합의하여 재조정한다.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학 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일정 지연 등의 문제는 향후 체결될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갑”과 “을”이 합의한 내용으로 명기하기로 한다.

#### 제8조(R&DB센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및 부지 사용권)

1.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준공된 R&DB센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총사업비에 대한 “갑”과 “을”의 출연금 비율을 지분비율로 하여 민법 제262조에서 규정하는 공유로 등기한다.

2. 본 협약서 제2조에 규정된 R&DB부지는 본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20년간 “을”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이후 계약기간부터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R&DB부지의 대여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에 따른 R&DB센터의 기부 또는 부지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절차와 합의내용에 따른다.

### 제9조(준공 후의 운영 및 관리)

1. 준공된 R&DB센터 건물, 기타 부대시설(도로, 주차장, 전기, 통신, 상·하수도, 기타 필요시설 등 포함)은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계획안의 사업계획서와 세부계획서 및 “갑”과 “을”이 본 협약서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합의한 내용에 따라 R&DB센터의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을”이 주체가 되어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위 제9조 제1항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입과 제비용(“갑”과 “을”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 포함)은 “을”이 본 협약서의 목적에 상응하여 관리하고 부담한다.

3. 본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회계처리는 “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상호협력책임)

1.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을”이 주체가 되어 진행을 하되, 공사허가·공사수행·시설물등기·지역혁신기관 간 연계강화 및 효율성 도모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의 수행에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업무에 관하여 인프라 확충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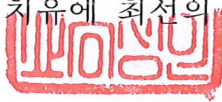
2. 본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및 세부계획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호 서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갑”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인프라 확충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을”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

### 제11조(불가항력)

1. 협약당사자의 일방이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폭동, 전쟁, 파업 등 기타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을 이유로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는 협약의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의무의 이행을 방해 받고 있는 협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불가항력에 의하여 의무의 이행을 방해 받고 있는 협약당사자는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의 제거 또는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12조(발효일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은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 되지 않는 한, 협약당사자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효력을 지속한다.

### 제13조(협약의 종료)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본 협약은 종료 된다.

1. 인프라 확충 사업에 필요한 관계당국의 승인 내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본 협약상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협약당사자의 일방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보정을 서면으로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협약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협약의 유효로 인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협약상의 의무 및 협약당사자의 민법 기타 법률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

#### 제14조(비밀유지의무)

1.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하는 상대방의 주요한 사업상의 정보를 비밀정보로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조에 규정하는 협약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제12조의 협약기간의 만료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종료의 경우에도 그러한 만료 또는 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 목적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6조(신의성실원칙)

1. 본 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상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서의 내용 또는 수행하는 인프라 확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의 규정 또는 감독관청 등에 의해 법률위반이라고 결정된 때에는 협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수정 보완하여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협약 하여야 한다.

### 제17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 제1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관행에 따라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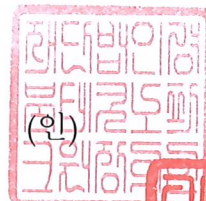
### 제19조(완전협약)

본 협약서 및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관한 협약당사자 간 합의의 전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본 협약의 체결이전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적용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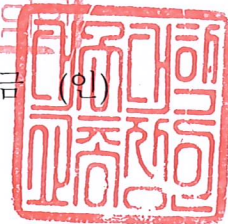
협약당사자 “갑”과 “을”은 이상에 명시된 내용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각자의 대표자로 하여금 본 협약을 체결케 하였고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이 재 훈



(인)

“을” : 대 구 대 학 교 총장 직무대행 조 희 금



(인)